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1,170,184	9,035,106
일반회계	252,688,913	7,580,667
특별회계	48,481,271	1,454,438
공기업특별회계	31,171,795	935,15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517,864	525,53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653,931	409,618
기타특별회계	17,309,476	519,28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60,954	40,829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145,000	4,35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957,797	28,734
공업단지특별회계	32,852	986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9,914	29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6,786	804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	4,656,781	139,703
기반시설특별회계	42,822	1,28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076,570	302,297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49,43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